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3. 17 선고 2020가단186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2. 17.

판결 선고2021. 3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.부터 2020. 12. 3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7. 8. 31. 피고에게 경주시 C건물 D호를 2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, 피고는 잔금 6,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잔금 6,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인 2017. 9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한소희